

발 간 등 록 번 호

11-1311000-000378-01

www.nanumKorea.go.kr

나눔
포털

더+하고
나누고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



행정안전부



더+하고 나누고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목 차

제 I 장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1

- 1. 기부금품의 개념(법 제2조제1호) 3
- 2.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법 제2조제2호) 3

제 II 장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5

- 1.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7
 - 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7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 관여 7
- 2.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8

제 III 장 기부금품 모집절차 9

- 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2
- 나. 기부금품 모집 19
- 다. 모집등록변경 신청 26
- 라. 기부금품 모집 결과 보고 27
- 마. 기부금품의 사용 29
- 바. 기부금품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29
- 사.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31

제Ⅳ장 **기부금품 소득공제** 39

1. 세제적격단체의 개념 41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41

 나.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의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소관) 41

2. 세제적격단체 신청절차 42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행정안전부) 43

 나.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의 주무관청) 57

참 고 자 료

1. 관련 서식 71

2.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법령 91

3. 질의응답 사례 109

4. 나눔포털 이용가이드 115

제 I 장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I.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1. 기부금품의 개념(법 제2조제1호)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 반대급부

-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예: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 급부-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2.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법 제2조제2호)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입니다.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제 II 장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Ⅱ.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1.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 관여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가 가능 합니다.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법 제2조제1호 각목)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제 Ⅲ 장

기부금품 모집절차



Ⅲ. 기부금품 모집절차

기부금품 모집관련 절차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결과 보고, 기부금품 사용,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각 단계마다 작성해야할 작성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본 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서식의 작성방법 및 세부활동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서식 이외의 서식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가능하나, 서식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단체가 많아 기준서식을 만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계	작성 서식	비고(법정서식)
가.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 신청서	서식 1 (별지제1호)
	기부금품모집계획서	서식 2
	기부금품사용계획서	서식 3
나. 기부금품 모집	기부모집금출납부	서식 4 (별지제5호)
	기부모집물품출납부	서식 5 (별지제6호)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서식 7 (별지제7호)
	기부금품영수증 (기부금품영수증발급명세서)	서식 7 (법인세법 별지제63의3)
다. 모집변경신청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서식 1 (별지제1호)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서식 2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서식 3
라. 기부금품 모집결과보고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서식 9 (별지제8호)
마. 기부금품 사용	-	-
바. 기부금품 목적외사용 승인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서식 8 (별지제4호)
사.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서식 10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서식 11 (별지제9호)
	지출대장	서식 12
	세부지출대장	서식 13

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등록신청을 하며, 모집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 대상사업(법 제4조 제2항)

- 국제적 구제사업(예: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자원, 동남아 쓰나미 이재민지원 등)
-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호사업(자연재해는 제외 : 재해구호법에 따라 별도)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서식 1]
- ② 기부금품모집계획서[서식 2]
- ③ 기부금품사용계획서[서식 3]
- ④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한함)
- ⑤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⑥ 대표자 이력서, 임원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준등록지)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기타 공익 사업인 경우는

⑦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기부금품모집
등록추천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이나 행정안전부 나눔포털(www.naumkore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 모집자가 개인일 경우

- ① 성명 : 모집자 개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 모집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주소 : 모집자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④ 연락처 : 모집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⑤ 명칭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⑥ 연락처 : 법인, 또는 단체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⑦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⑧ 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⑩ 대표자 주소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⑪ 대표자연락처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작성 (비법정 서식)

기부금품모집계획서(서식 2)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 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 보관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법 제4조1항)

※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다만,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다음 서식 참고.

〈서식 2〉 기부금품모집계획서 작성예시

기부금품모집계획서	
① 모집목적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지원
②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③ 모집목표액	5,000,000,000원
④ 모집지역	전국
⑤ 모집방법	가. 거리모금 :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심가와 지하도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통행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부하게 한다. 나.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서 직접 지정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⑥ 모집기간	2010년 10월 1일 ~ 12월 31일
⑦ 모집금품 보관방법	가. 거리모금 : 매일 최종시간까지 모금한 금액을 지정한 장소인 ○○○사무실에 수합하여 개수한 후 지정은행에 예치한다. 나.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서 직접 지정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다. 물품후원 : 후원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게 한다.

- ① 모집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기재합니다.
- ② 모집금품의 종류 : 모집금품의 종류를 현금, 물품, 현금 및 물품 등으로 기재합니다.
- ③ 모집목표액 : 목표로 하는 모집목표액을 기재합니다.
- ④ 모집지역 : 모집지역을 시/군 단위로 기재하며 전국적인 모집일 경우 전국으로 기재합니다.
- ⑤ 모집방법 :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⑥ 모집기간 : 모집시작일과 종료일을 년, 월, 일로 기재합니다.
- ⑦ 모집금품 보관방법 : 모집된 모집금품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3)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작성 (비법정 서식)

기부금품사용계획서에는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 방법 및 사용기간을 명시합니다.(법 제4조1항)

※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다만,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다음 서식 참고.

〈서식 3〉 기부금품사용계획서 작성예시

기부금품사용계획서			
1. 사용목적 : 가뭄, 인구이동, 분쟁, 식량안보 등으로 인하여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맞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 ※ 참고자료 : 동남아 지역 어린이 구호 필요성 설명자료 붙임			
2. 사용기간 2011년 9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3. 사용방법			
○ 식량지원 : 쌀, 밀가루 각 10000포대 구입하여 현지로 배송			
○ 의약품지원 : 000, 000 앰플 각 1000개, 영양제 100개 구급차 1대 구입하여 현지로 배송			
○ 건강증진 프로그램 : 현지 체육시설 설치 및 운동기구 100개 구입하여 현지로 배송			
○ 위생시설 보급 : 현지 민간단체인 oo과 함께 oo, oo지역에 간이화장실 100개 설치			
사용분야	금 액	사용세부일정	산출근거
식량지원	1,000백만원	'11.9.1~'12.6.30	쌀 : 5억원=10000포×5만원 밀가루 5억원=10000포×5만원
의약품 지원	2,000백만원	'11.10.1~'12.10.30	...
건강증진 프로그램	1,000백만원	'12.1.1~'12.12.31	...
위생시설 보급	1,000백만원	'11.9.1~'12.12.31	...
합계	6,000백만원		
4. 모집비용 예정액 : 65백만원(모집액의 1%)			
사용분야	금 액	산출근거	
홍보비	45백만원	신문광고 : 40백만원=2회×20백만원 브로셔 : 5백만원 = 10000부×500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4백만원	식대 : 1백만원=100명 × 2회 × 5000원 단체복 : 3백만원=100명 × 1개 × 30000원	
현지조사 출장비	4.6백만원	항공료 : 3백만원=2인 × 1.5백만원 체제비 : 1.6백만원=2인×10일×80000원	
회계감사보고	10백만원		
합계	65백만원		
5. 모집비용 조달방법 : 법인자산으로 우선 조달 후 모집된 기부금으로 충당 ※ 법인 현 자산 100억원			

나.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완료되면 모집활동을 수행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시 모집자는 (1)기부금품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2)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법 제6조)

-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법 제7조)

-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 :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 경비 등)

***** 모집비용 총당비율(법제7조)**

모 집 금 액	적 용 비 율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 위의 모집금액은 모집등록 시 제출한 모집 목표금액이 아니라, **실제 모집 금액**입니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확인

기부금품 접수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부모집금출납부(서식 4), 또는 기부모집물품출납부(서식 5),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서식 6)에 기재합니다.

○ 기부모집금 출납부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서식 4〉 기부모집금출납부

기부모집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① 연월일	수 입			지 출			⑧잔고
	②기부자 주소성명	③금액	④누계	⑤지출 내용	⑥금액	⑦누계	

- ① 연월일 : 수입 또는 지출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② 기부자 주소·성명 : 기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③ 금액 :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 ④ 누계 : 기부금의 누계액을 기재합니다.
- ⑤ 지출내용 : 지출내용을 기재합니다.
- ⑥ 금액 :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
- ⑦ 누계 : 지출금액의 누계액을 기재합니다.
- ⑧ 잔고 : 수입금액(④ 누계)에서 지출금액(⑦ 누계)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서식 5〉 기부모집물품출납부

기부모집물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①연월일	수 입			출 급 (出給)			
	②기부자주소·성명	③품명	④수량	⑤출급내용	⑥품명	⑦수량	

- ① 연월일 : 수입 또는 출급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② 기부자주소·성명 : 기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③ 품명 : 기부한 기부품명을 기재합니다.
- ④ 수량 : 기부한 기부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 ⑤ 출급내용 : 기부품의 출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⑥ 품명 : 출급한 기부품명을 기재합니다.
- ⑦ 수량 : 출급한 기부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 기부모집금품 모집비용지출부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서식 6〉 기부모집금품 모집비용지출부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별지 제7호서식)						
①연월일	②지출내용	③예산액	지출액		⑥잔액	⑦비고
			④지출	⑤누계		

- ① 연월일 : 모집비용지출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② 지출내용 : 지출내용을 기재합니다.
- ③ 예산액 : 현재의 예산액을 기재합니다.
- ④ 지출 :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
- ⑤ 누계 : 누계지출액을 기재합니다.
- ⑥ 잔액 : ③ 예산액에서 ⑤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⑦ 비고 : 기타 비고사항을 기재합니다.

(2)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

(법정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서식 7〉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부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금 모집처 (언론기관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기부금품			금액
				품명	수량	단가	
<p>「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p>							

작성방법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유형 5, 코드 40)
 - 나.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유형 1, 코드 10)
 - 다. 그 밖의 기부금(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적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서류비치의 의무

-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기부모집금출납부, 별지 제6호 기부모집물품출납부, 별지 제7호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다. 모집등록변경 신청

기부금품의 모집 중 모집기간의 연장, 목표액 증액 등 등록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변경을 신청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1)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서식 1), (2)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서식 2), (3) 기부금품 사용계획서(서식 3)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모집등록신청과 동일합니다.

※ 신청기간

- 모집기간 연장 : 등록된 모집기간 만료 이전
 - ☞ 기간 만료 후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없음
- 목표액 증액 : 등록된 모집 목표액 도달 이전
 - ☞ 사전 승인 없이 목표액을 초과 모집한 경우 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될 수 있음에 유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기부금품 모집 결과 보고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모집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금품 총액/수량 등의 모집결과정보를 취합하여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등록청에 (1) 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서식 9)와 (2)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모집결과 공개의무(시행령 제19조 3항, 4항)

-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3항)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4항)

(1)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서식 8〉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 계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원 상당)

6. 모집금품의 금융기관 예치내역(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 별첨)

금융기관별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첨부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①

귀하

마. 기부금품의 사용

기부금품 모집이 되면 등록신청시 제출한 계획대로 기부금품을 집행하고, 집행 내역을 장부에 기재합니다.(기부모집금출납부, 기부모집물품출납부)

당초 승인된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기한 만료 이전에 기부금품 사용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집등록 변경신청 방법과 동일)

바. 기부금품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모집등록이 말소(법 제10조2항) 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법 제12조1항)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품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을 당초 모집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와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서식 14)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서식 9〉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1. 모집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

2. 모집금품총량 : 원 또는 점(환산액 원)

위 내역 모집예정총량
모집과부족량

3. 처분 및 사용하려는 이유 :

4. 처분 및 사용하려는 방법 :
(등록당시의 방법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5. 처분 및 사용일시와 장소 :

위에 의하여 처분 및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①

귀하

사.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기부금품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기한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등록청에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사용결과보고서 제출하는 서류는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서식 10), (2)회계감사보고서(서식 11) (3)모집 및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실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생략되는 대신 기부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의 의무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2항)

(1)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서식 10〉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 계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원 상당)

6. 모집금품의 사용내역(영수증 등은 자체보관)

사용내역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고
합 계			
모집비용		(사용내역 별첨)	모집금액의 %

※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자체보관

※ 물품 점(원 상당) : 0 0에 기증

7.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00일자)

- 첨부 : 1.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00일자) 1부
 2. 회계감사보고서 1부(해당되는 경우)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작성 방법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1. 모집자 :

◆ 기부금품 모집자의 단체(개인)명 기재

2.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된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마련

◆ 기부금품 모집목적 기재

3. 모집등록기간 : 2011. 01.01 ~ 2011. 12.31(등록번호 제 2011-10호)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간 기재

4. 모집등록금액 : 2,300,000,000원

◆ 기부금품 모집등록금액 기재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총 240,000,000원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기업·행사·기타	200,000,000	
ARS 모금	20,000,000	
온라인 모금	10,000,000	
합 계	230,000,000	※모집등록금액 대비 10%

나. 물품 : 방한복 100000점 (10,000,000원 상당)

◆ 모집금품의 모금방법, 현금 총액 또는 물품 총수량의 기재

6. 모집금품의 사용내역(영수증 등은 자체보관)

사용내역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 고
장학금지급	1,571,345,345	첨부1	
공부방지원	600,216,980	첨부2	
합 계	2,171,562,325		
모집비용	120,986,101	첨부3	모집금액대비 5.28%사용

※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자체보관

※ 물품 : 방한복 100000점 (10,000,000원 상당) : ○○고아원에 기증

◆ 모집금품의 사용내역, 금액 또는 수량, 사용방법의 기재

7.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1년 12월 31일자)

<http://www.mopas.go.kr> 공지사항

첨부 : 1.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1부

2. 회계감사보고서 1부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재단법인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 회계감사보고서

※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다만,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다음 서식 참고

〈서식 11〉 회계감사보고서 예시

회계 감사보고서

○○○○ 귀중
○월 ○일

○○○○년

본 감사인은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을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가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요구되는 보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의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소 주소 :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 ○ ○ (인)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내역 및 사용결과

- 동 기관은 '10.1.1~'11.9.30까지 000 지진 피해자 구호를 목적으로 35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모집목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사업을 위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모집등록 내역〉

사용분야		금 액	사용세부일정	비 고
사 업 비	이재민 구호	18억원	'11.9.1~'12.6.30	
	심리상담소 설치	10억원	'11.10.1~'12.10.30	
	복구 지원	40억원	'12.1.1~'12.12.31	
모집비용		2억원	'11.9.1~'12.12.31	모집액의 3% 이내
합계		70억원		

〈실 모집 및 집행내역〉

사용분야		금액	사용세부일정	비 고
사 업 비	이재민 구호	9억원	'11.9.1~'12.6.30	
	심리상담소 설치	5억원	'11.10.1~'12.10.30	
	복구 지원	20억원	'12.1.1~'12.12.31	
모집비용		1억원	'11.9.1~'12.12.31	모집액의 3% 이내
합계		35억원		

- 동 기관은 당초 등록된 사용계획대로 기부금 집행을 '12.12.31까지 완료 하였으며, 모집비용 또한 당초 등록된 대로 모집액의 3%이내에서 집행 하였습니다.

○ 지출내역

구 분		③세부내용	④지출액 (단위:원)
①대분류	②중분류		
이재민구호	서울병원	약품, 처치세트 구입비	6,179,850
	부산지사	장비, 차량, 급식비 등	582,000
	대구지사	장비, 차량, 급식비 등	608,780

복구지원	서울지사	25가구 지원	12,700,000
	부산지사	43가구 지원	22,100,000
	인천지사	17가구 지원	8,600,000

- ① 대분류 : 모집금품 사용내역을 기재합니다. 예를들어 ‘<서식 16>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의 ‘6. 모집금품의 사용내역’의 분류를 기재합니다.
- ② 중분류 : 대분류의 하위분류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중분류에 기재합니다.
- ③ 세부내용 : 모집금품을 사용한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④ 지출액 :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 대분류에 여러개의 중분류가 있을 경우에는 중분류 금액을 더하여 대분류 단위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세부지출내역

① No.	② 회계일자	③ 적요	④ 차변	⑤ 누계	⑥ 전표번호
1	2011/05/01	서울병원 약품구입	3,000,000	3,000,000	10000001
2	2011/05/01	서울병원 처치세트구입	3,179,850	6,179,850	10000001
3	2011/05/01	부산지사 장비구입	82,000	6,261,850	10000001
...

* 지출대장(서식18)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기재합니다.

- ① No.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회계일자 : 회계일자를 기재합니다.
- ③ 적요 : 적요를 기재합니다.
- ④ 차변 : 차변금액을 기재합니다.
- ⑤ 누계 : 누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⑥ 전표번호 : 전표번호를 기재합니다.

제 IV 장

기부금품 소득공제



IV. 기부금품 소득공제

1. 세제적격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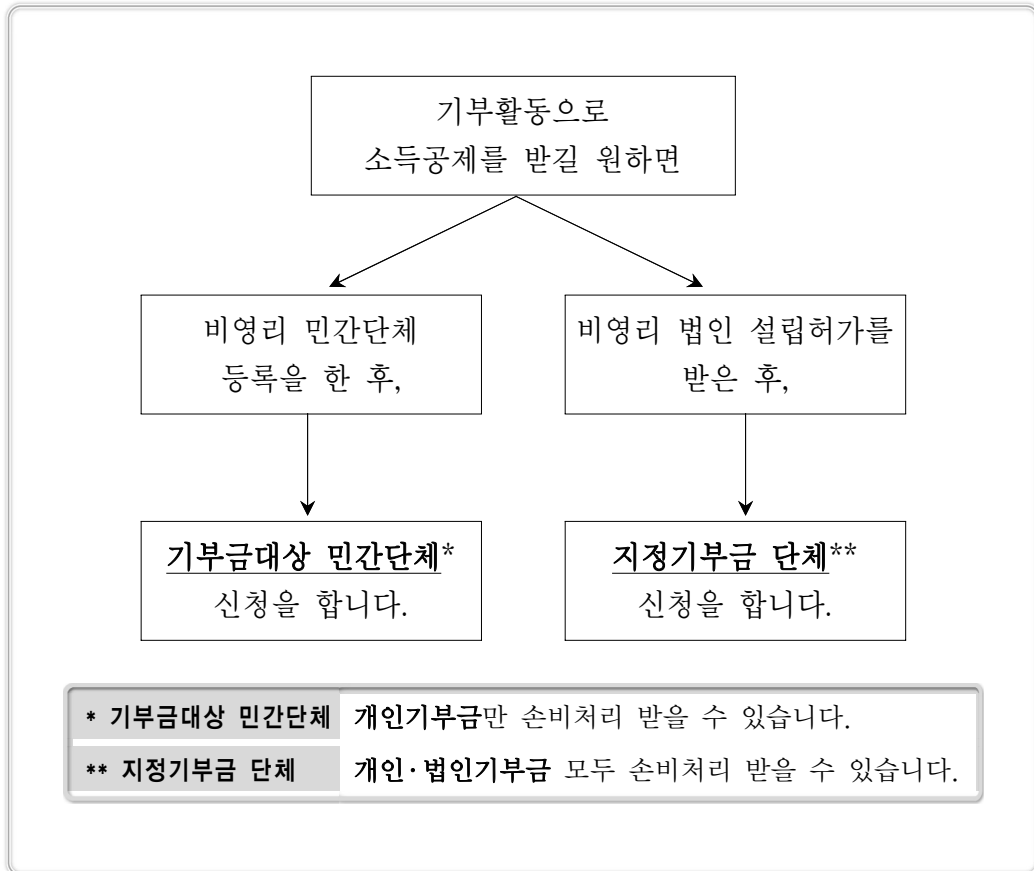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의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소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무관청(법인설립을 허가받은 행정기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세제적격단체 신청절차

세제적격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법상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됩니다.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는 개인기부금만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에 반해, 지정기부금 단체는 개인·법인기부금 모두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을 가진 기관은 법인(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절차

(1)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정의된 단체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서식 14)”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표1 비영리 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참조)를 구비하여 주무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작성방법

- ① 성명 : 신청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대표자와의 관계 : 신청자와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④ 연락처 : 신청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⑤ 주소 : 신청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⑥ 명칭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⑦ 연락처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⑧ 소재지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⑨ 대표자 성명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 대표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⑩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⑪ 대표자 주소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 대표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⑫ 대표자 연락처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 대표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⑬ 주된사업 : 등록하고자하는 단체의 주된 사업을 기재합니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신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입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정관이나 회칙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등으로 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정관 개정 후 신청)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개인의 회비·후원금은 **단체나 법인 후원금 등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함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수익을 회원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2012년 신청의 경우 2011.1.1 이전 개설된 통장이 있고, 2011.1.1~12.31까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 사본(앞면 및 세부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함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단체 대표나 총무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1개라도 있으면 안됨)
 - 통장으로 회원의 회비·후원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천불가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신청서의 동의함에 체크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거나, 정관에 기부금 홈페이지 공개내용이 없는 경우 추천 불가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내역이 언론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추천 불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 15)”를 작성하고, 첨부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전년도 수입 내역(서식 16),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서식 17)·결산서 사본(서식 18)”을 첨부하여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이나 행정안전부 나눔포털(www.naumkore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처리절차, 손비인정,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절차
 - 상반기 : 접수(2.1~3.31), 검토(4월), 추천(5월), 발표(6.30)
 - 하반기 : 접수(8.1~9.30), 검토(10월), 추천(11월), 발표(12.31)

- 손비인정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법인 기부자 : 없음

-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 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제출
 - 지정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아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신청서 작성방법

- ① 단체명 : 신청하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단체설립일 : 단체설립일자를 기재합니다.
- ④ 사업개시일 : 사업개시일자를 기재합니다.
- ⑤ 단체주소 : 신청하는 단체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⑥ 단체연락처 : 신청하는 단체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성명 :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⑧ 전화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⑩ 휴대폰 :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⑪ 사업목적 : 단체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 ⑫ 수입내역 :

전체 수입액 (A)	회비		후원금		보조금 (B)		수익 사업	기타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a)	법인 등	개인(b)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C)	(D)

- 전체수입액 * : 단체의 전체 수입액을 기재합니다.

<수입관련 지정요건 충족 판단 기준>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text{개인회비(a)} + \text{개인후원금(b)} > \text{전체수입액(A)} \times 50\%$

※ 상기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수입액(A)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이월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수입액을 재산정(A')하여 계산할 것. 재산정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가능

▶ $\text{전체수입액 재산정(A')} = \text{전체수입액(A)} - \text{보조금(B')} - \text{이월금(C)} - \text{차입금(D)}$

※ 보조금(B') = 보조금(B) - 국가·지자체로 받은 보조금

- 회비 (개인) * : 개인회비를 기재합니다.
- 회비 (법인 등) : 법인회비를 기재합니다.
- 후원금 (개인) * : 개인후원금을 기재합니다.

* 개인의 회비·후원금은 단체나 법인 후원금 등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을 말함

- 후원금 (법인 등) : 법인후원금을 기재합니다.
- 보조금 (운영비) : 운영비를 기재합니다.
- 보조금 (사업비) : 사업비를 기재합니다.
- 수익사업 : 수익사업비용을 기재합니다.
- 기타수입 : 기타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월금 : 이월금액을 기재합니다.
- 차입금 : 차입금을 기재합니다.

⑬ 기부금의 용도 : 기부금액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 전년도 수입내역 서식

<서식 16>

0000년도 수입 내역(예시)

□ 수입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기타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단체등	개인	법인, 단체 등	운영비	사업비				
합계	182	60	12	82	2	10	6	2	2	1	5
1월	17	5	1	11							
2월	15	5	1	5	1		2		1		
3월	14	5	1	2		1	3	1	1		
4월	6	5	1								
5월	7	5	1	1							
6월	10	5	1	4							
7월	21	5	1	5		5					5
8월	14	5	1	7				1			
9월	11	5	1	5							
10월	9	5	1	1	1		1				
11월	11	5	1	1		4					
12월	47	5	1	40					1		

회비 세부내역 : 총 원

○ 개인 회비

일 자	성명	금액(원)	비고
총 계		60,000,000	
1월 소계		5,000,000	
1. 1	홍길동	100,000	
1. 2	성춘향	3000,000	
1. 3	변학도	750,000	
...	
...	
2월 소계			
3월 소계			
-			
-			
12월 소계			

* 회비세부내역이 통장기재내역과 일치해야 함

* 수입내역 총괄표와 총계가 일치해야 함

○ 법인·단체 등 회비

일 자	법인·단체명	금액(원)	비고
총 계		12,000,000	
1월 소계		1,000,000	
1. 1	꽃다운 가게	500,000	
1. 2	○○ 교회	100,000	
2. 3	○○ 학교	100,000	
...	
...	
2월 소계			
3월 소계			
-			
-			
12월 소계			

* 개인명의로 아닌 경우는 법인단체 회비로 기재

□ 후원금 세부내역 : 총 원

○ 개인 후원금

일 자	성명	금액(원)	비고
계			
1월 소계		82,000,000	
1. 1	향단이	100,000	
1.10	방자	500,000	

2월 소계
3월 소계			
-			
-			
12월 소계			

○ 법인·단체 등 후원금

일 자	법인·단체명	금액(원)	비고
계		2,000,000	
1월 소계		0	
2월 소계		1,000,000	
2.27	별나라전자	1,000,000	
3월 소계			
-			
-			
12월 소계			

보조금 세부내역 : 총 원

일 자	적요	보조기관	금액(원)	비고
계				
0. 0	000사업	00 시·군·구청	100,000	
0. 0	000사업	00 시·군·구청	100,000	
0. 0	000사업	00 시·군·구청	100,000	
0. 0	000사업	00 시·군·구청	100,000	
0. 0	000사업	00 시·군·구청	100,000	
0. 0	000사업	00 시·군·구청	100,000	

수익사업 세부내역 : 총 원

일 자	적요	금액(원)	비고
계		500,000	
0. 0	000 바자회 수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기타수입 세부내역 : 총 원

일 자	적요	금액(원)	비고
계		500,000	
0. 0	예금이자수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0. 0	000사업	100,000	

○○수입 세부 수입내역 : 총 원

일 자	적요	금액(원)	비고
계		500,000	
0. 0	000	100,000	
0. 0	000	100,000	
0. 0	000	100,000	
0. 0	000	100,000	
0. 0	000	100,000	

<서식 17>

○○년도 수지예산서

1. 세 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비고
회비			
후원금			
지원금			
잡수익			
:			
계			

2. 세 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계		

* 모두 전년도 자료이며, 당초계획과 결산을 보기 위한 것임

○○년도 수지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③			③		
④			④ 사업비	장애인교육	5,321,630
				장애인상담	986,324
				중증장애인 리더양성	1,216,230
			
합 계			합 계		

*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 사업비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단체의 공익성을 분명히 할 것

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¹⁾

○ 비영리법인의 정의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방법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주무관청)을 선택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법인의 활동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는 해당 시·도로 제출)

① 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예를 들어 사무처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sign이나 날인도 가능합니다. 소재지는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설립등기를 감안하여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하며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간략히 소개하고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을 표시합니다.

1) 참고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실

③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합니다.(단, 재단 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민법 제43조) 법인이 출연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④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며 기본재산이 타 용도의 재산과 함께 예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면 됩니다.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분의 사업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합니다. 법인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⑥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은 설립발기인의 약력작성 예에 따라 작성하고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하도록 합니다.

⑦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 설립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법인설립 구비서류 목록

구 비 서 류	법 인 별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		공익법인 (공익법)		비 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부령 별지1호	○	○	○	○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4-①-2	△	△	○	○	공익법인
3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부령 3-1 공익령4-①-1	○	×	○	×	사단법인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부령 3-5	○	○	○	○	공통
5	임원취임승락서, (필요시 검직동의서)	부령 3-5	○	○	○	○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12	×	×	○	○	공익법인
7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령 3-6 공익령4-①-8	○	×	○	×	사단법인
8	출연자 확인서 (※ 정관을 첨부하여 간인)	민법 43	×	○	×	○	재단법인
9	정관 (정관작성기준 준수) (※ 재단법인의 경우 8호 첨부물로 같음 가능)	부령 3-2 공익령4-①-3	○	○	○	○	공통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	×	○	○	공익법인
11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승락서에 해당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2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부령 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공통
13	기본재산 목록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4	(보통·운영)재산 목록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5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	×	공익사단
16	사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의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①-8	△	×	○	×	공익사단
17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부령 3-4	○	○	×	×	비영리법인
18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1-7	×	×	○	○	공익법인
19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민법33, 36	○	○	○	○	공통

- 주) 1. 법정서식 : 민법·공익법·공익령은 별지 서식이 없으며, 부령에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을 별지 서식(제1~2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임
2. 非營利法人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만 징구하여야 할 것이고,
3. 공익법 제1조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의로 보면 공익법인 전체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공익법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징구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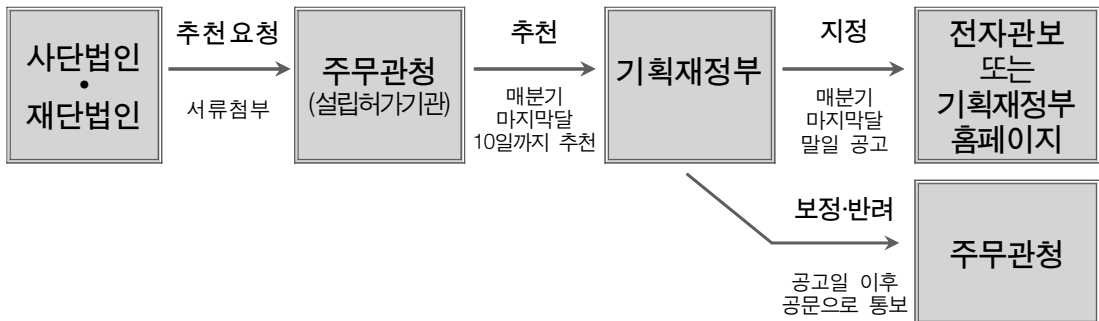
(2)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대상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36조①1 사목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입니다.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합니다.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것 *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신규 신청하는 경우

1. 개요



2. 추천시 제출서류

-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정관 ⑤ 사업계획서
-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 :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 ⑦ 지정요건이행실적서(재지정 단체의 경우만 해당)

3. 추천방법

- 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서류제출 : 1분기 2.15까지, 2분기 5.15까지, 3분기 8.15까지, 4분기 11.15까지

4. 지정결과 통보

- 매분기 마지막일(3.31, 6.30, 9.30, 12.31) 관보를 통해 공고
- 1주 후 주무관청에서 공문을 통해 개별 통보

5. 지정기간

-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② 기부자 손비인정

- 법인 :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10.12.31까지 지출분은 5%)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10.12.31까지 지출분은 20%)*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인정

*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10%

6. 사후관리의무

-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이하 “요건 충족여부 등”이라 함)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
 - * 1~2년차 실적은 3년차에, 3~4년차 실적은 5년차에, 5~6년차 실적은 재지정신청시 제출
 - * 2010년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2010.2.19일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요건 충족여부등을 주무관청에 제출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 다. 요건 충족여부등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8.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 ● ●

-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 하는 경우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다만, 주무관청은 2010.2월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지정요건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그 실적을 점검하여 재지정추천시 기획재정부로 통보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 ●

-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의뢰

* 매분기별 명칭변경 접수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

참고 1**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별 지정요건**

* 2007년 이전 : 법인세법시행규칙 § 18①39, 2007년 이후 : 법인세법시행령 § 36①1 사목

□ **2008년 이전에 지정된 단체**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2008년, 2009년에 지정된 단체**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2010년 이후에 지정된 단체**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작성 예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이행실적(2010년 2월 ~ 현재)

□ 법인명 : 00000000

□ 지정기간 : 2005년 ~ 201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1.1~2.30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 4.1~4.15 노숙자 무료 급식사업 - 1.1~12.31 무료 청소년 공부방 운영 - 000 - 0000 - 0000 ○ 회원간 친목도모, 권익보호 또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없음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제31조(해산)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참고 : 기부금품의 손비처리

가. 기업체 등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적용 항목		세제혜택	비고
법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④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 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특례기부금 (‘12.12.31까지 한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 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④ 독립기념관 기부금 ⑤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 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부금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⑦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부금 ⑧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부금 ⑨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⑩ 결식 또는 빈곤층아동 복지증진 비영리법인 기부금 ⑪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기금 ⑫ 박물관 또는 미술관 기부금 ⑬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기부금 ⑭ 휴먼예금관리재단 기부금 등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
지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기부금 ③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④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⑤ 종교 보급 기타 교화 목적 단체 ⑥ 의료법인 ⑦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소득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나.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적용 항목		세제혜택	비고
법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가액 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 ⑦ 산학협력단, 학교, 비영리교육재단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기부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⑩ 문화예술진흥기금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특례기부금 (*12.12.31까지 일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② 사립학교병원,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지방의료원 기부금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④ 독립기념관 기부금 ⑤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부금 ⑥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부금 ⑦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부금 ⑧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⑨ 결식 또는 빈곤층아동 복지증진 비영리법인 기부금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기금 ⑪ 박물관 또는 미술관 기부금 ⑫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기부금 ⑬ 휴먼예금관리재단 기부금 등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지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기부금 ③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④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⑤ 종교 보급 기타 교화 목적 단체 ⑥ 의료법인 ⑦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⑧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소득액의 3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참 고 자 료



관 련 서 식

1. 관련 서식

(1)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서식 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 신청서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 락 처	
	⑤명 칭		⑥연 락 처	
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⑩대표자연락처	
	⑩대표자주소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p>< 등록(변경) 신청시 첨부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 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 기타사항 				

(2) 기부모집금출납부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서식 4〉 기부모집금 출납부

기부모집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① 연월일	수 입			지 출			⑧잔고
	②기부자 주소·성명	③금액	④누계	⑤지출 내용	⑥금액	⑦누계	

(3)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서식 5〉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기부모집물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①연월일	수입			출급(出給)		
	②기부자 주소·성명	③품명	④수량	⑤출급내용	⑥품명	⑦수량

(4) 기부모집금품 모집비용지출부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서식 6〉 기부모집물품 모집비용지출부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별지 제7호서식)						
①연월일	②지출내용	③예산액	지 출 액		⑥잔액	⑦비고
			④지 출	⑤누 계		

(5) 기부금품 영수증

(법정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서식 7〉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부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금 모집처 (언론기관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기부금품			금액
				품명	수량	단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기부금 수령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유형 5, 코드 40)
 - 나.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유형 1, 코드 10)
 - 다. 그 밖의 기부금(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적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6)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서식 8〉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1. 모집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

2. 모집금품총량 : 원 또는 점(환산액 원)

 위 내역 모집예정총량
 모집과부족량

3. 처분 및 사용하려는 이유 :

4. 처분 및 사용하려는 방법 :
(등록당시의 방법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5. 처분 및 사용일시와 장소 :

위에 의하여 처분 및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7)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서식 9〉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 1. 모집자
- 2. 모집목적
- 3. 모집등록기간
- 4. 모집등록금액
-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 계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원 상당)

- 6. 모집금품의 금융기관 예치내역(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 별첨)

금융기관별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첨부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8)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법정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서식 1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 1. 모집자
- 2. 모집목적
- 3. 모집등록기간
- 4. 모집등록금액
-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 계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원 상당)

- 6. 모집금품의 사용내역(영수증 등은 자체보관)

사용내역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고
합 계			
모집비용		(사용내역 별첨)	모집금액의 %

※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자체보관

※ 물품 점(원 상당) : 0 0에 기증

- 7.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00일자)

첨부 : 1.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00일자) 1부
 2. 회계감사보고서 1부(해당되는 경우)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9)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법정서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서식 14〉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대표자와의 관계		④ 연락처	
	⑤ 주소			
단체	⑥ 명칭		⑦ 연락처	
	⑧ 소재지			
	⑨ 대표자성명		⑩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⑪ 대표자주소		⑫ 대표자연락처	
	⑬ 주된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10)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법정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 4 서식)

〈서식 15〉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단 체 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③ 단체설립일				④ 사업개시일						
⑤ 단체주소				⑥ 단체연락처						
대표 자	⑦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⑧전화			⑩휴대폰						
2. 기부금 관련										
가. 사업목적 ⑪										
나. 수입내역 ⑫										
(단위 : 백만원)										
전체 수입액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기타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다. 기부금의 용도 ⑬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3. 결산보고서 공개 동의여부										
결산보고서 전체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단체명)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1) 수입내역서(비법정 서식)

〈서식 16〉 수입내역서

0000년도 수입 내역

수입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기타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단체등	개인	법인, 단체 등	운영비	사업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원금 세부내역 : 총 원

○ 개인 후원금

일 자	성 명	금액(원)	비고

○ 법인·단체 등 후원금

일 자	법인·단체명	금액(원)	비고

보조금 세부내역 : 총 원

일 자	적 요	보조기관	금액(원)	비고

수익사업 세부내역 : 총 원

일 자	적 요	금액(원)	비고

기타수입 세부내역 : 총 원

일 자	적 요	금액(원)	비고

수입 세부 수입내역 : 총 원

일 자	적 요	금액(원)	비고

(12) 수지예산서 (비법정 서식)

○○년도 수지예산서

1. 세 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비고
회비			
후원금			
지원금			
잡수익			
:			
계			

2. 세 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계		

(13) 수지결산서(비법정 서식)

○○년도 수지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③			③		
④			④		
합 계			합 계		

※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14)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

(법정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2서식)

〈서식 19〉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전문모금기관 [] 한국학교 [] 공공기관등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추천기관의 장)

작성 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국제기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법령

2.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6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4. 삭제 <2010.6.8>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중사자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09.4.1>
- ④ 삭제 <2009.4.1>
- ⑤ 삭제 <2009.4.1>

부 칙 <제10346호, 2010. 6. 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한 모집자부터 적용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64호, 2011.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3.29>

제4조(시·도지사에게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3.29>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4.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교정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검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1]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모집비용 총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0.1]

부 칙 <제22764호, 2011. 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응답 사례

3. 질의응답 사례

Q. 일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은 어떤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

- A. 기부금품법에서는 일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등록없이 모집 가능)
- 그러나, 이는 등록의무가 제외된다는 것이지 목적 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일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됨.
 - ☞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민간의 소액 기부 행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임.

Q.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

- A. 단체(인터넷 카페)의 설립 목적 및 회칙에 찬동하여 일정한 회원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소속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당해 사이트의 성격, 개설목적, 운영형태, 회칙, 회원의 가입절차 및 회원의 활동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경우는 일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원이 아닌 사용자(user)에 해당되므로, 특정 카페가 아닌 인터넷 포털게시판을 통한 일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Q.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이란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 즉,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의 경우와 같이 통상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는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불우이웃 돕기 등을 위한 금전이나 물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거나, 1천만원 미만으로 모집을 해야함.

Q. 1천만원의 기준은 1회 모집금액인지? 만약 1천만원 미만을 모집 목표액으로 하여 등록없이 모금하였다가 실 모집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함.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며, 실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함.

Q.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 A. 단체의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문구와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것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므로 동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소속원·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통상 검색을 통해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내용은 이미 자발적 기탁의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안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후원안내 배너만 올리고 배너 클릭 후 간단한 후원회원 가입 절차 등을 통해 후원계좌가 별도로 노출되는 경우는 등록없이도 가능할 것임.
- ☞ 당해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등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재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필요


Q.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퇴직한 직원의 소송을 돕기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지?

- A.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 즉,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상호 동일한 지위에서 공동목표 또는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각출한 행위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나눔포털 이용가이드

4. 나눔포털 이용가이드


가. 기부금 모집단체를 위한 업무지원 서비스




유관 부처




국세청



지자체



민간나눔단체



나눔포털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기부금모집단체 간 온라인 보고체계를 지원합니다.

- 단체 등록

- 기부금 모집단체로 등록하여 모집 관리 및 단체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 기부금 모집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나눔포털 방문자에게 홍보 및 모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관리 / 보고

- 기부금 모집 결과를 온라인으로 관리/보고할 수 있어 나눔단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영수증 관리

- 온라인 기부영수증 발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12년말 예정)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 업무가이드

-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자료 및 기부업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나. 나눔포털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문의 전화 안내] 기부금품 모집 관련문의 : 02) 2100-3884, 2892

다. 나눔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

1) 나눔포털 회원가입



기부금 모집단체 관리자 등록을 위해서는 나눔포털 개인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함.

※ 실명인증을 거쳐 회원 개인정보 입력 시 단체 관리자 등록을 위해 회원정보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반드시 입력

2) 기부금모집단체 등록

- (1)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나눔포털 ID로 로그인 후 “MY나눔활동” 메뉴로 이동하여 좌측의 “관리자 인증하기” 메뉴를 선택 후 관리자 신청
- (2) 신청 시 인증 유형은 “나눔단체”로 선택한 후 전자공인인증서(NPKI)를 등록
- (3) 단체 정보 검색을 통하여 단체를 선택
 - ※ 신규등록 단체 : “직접입력” 선택 후 단체정보 입력
 - ※ 기존등록 단체 : 관리자 인증을 위해 해당단체 선택
- (4) 관리자정보를 입력 후 저장 (관리자 인증신청 접수상태)
 - ※ 관리자 인증 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 (5) 관리자 인증 요청 결과 확인
 - ※ 제출 서류 접수 후 1~2일 내에 확인 후 승인 결과 확인 가능
 - ※ 단체관리자 등록(인증) 결과는 “MY나눔활동” 메뉴의 “관리자 인증하기” 선택하여 승인 및 반려 (사유) 확인

3) 업무프로그램 설치



- (1) 나눔포털 로그인 후 “MY나눔활동” 메뉴에서 “관리자 인증하기”를 선택 후 “업무 시스템접속” 선택(또는 우측 상단의 업무관리를 선택)
- (2) 더하고 나누고 “설치하기”를 선택하여 업무시스템을 설치
- (3) 설치 완료 후 관리자 인증 시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업무시스템 로그인
 - ※ 설치 이후 로그인은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실행(또는 업무시스템접속)하여 로그인
- (4) 온라인 모금을 위한 PG(결제대행사) 가입
 - ※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단체정보” 메뉴에서 실시간 온라인 결제를 통한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PG가입신청”
 - ※ “PG가입신청” 후 결제대행사에서 계약관련 처리절차를 안내 후 결제코드발급 및 계약안내 메일 발송
 - ※ PG사에서 승인정보가 등록되면 결제 가능(단, 계약서류가 결제대행사에 도착되어야 정산집행 가능)

5) 기부금 모집 활동



(1) 승인된 모집등록 건을 조회하여 포털게시를 위한 내용작성

※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 모집인 경우 직접 작성

(2) 온라인 모금을 위해 결제수단 선택(결제수단은 단체별로 설정 가능)

※ 나눔포털을 통한 온라인 모금을 위해서는 PG(결제대행사) 가입이 선행되어야 함

(3) 모금을 위한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포털게시”를 선택하여 나눔포털 사용자들 대상으로 기부금 모집활동 수행

※ 온라인 모금을 위한 PG(결제대행사) 가입

-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단체정보” 메뉴에서 실시간 온라인 결제를 통한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PG가입신청”
- “PG가입신청” 후 결제대행사에서 계약관련 처리절차를 안내 후 결제코드발급 및 계약안내 메일 발송
- PG사에서 승인정보가 등록되면 결제 가능(단, 계약서류가 결제대행사에 도착되어야 정산 집행 가능)

6) 모집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순번	모집제목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작성일	보고일	접수일
1	북한걸출어린이들이 돕기 범국민운동	2011-01-01	2011-12-30	2011-11-02	2011-11-02	2011-11-02
2	푸른머건가꾸기	2011-01-01	2011-12-30	2011-11-02	2011-11-02	2011-11-02
3	2011 지구촌 사랑나눔기 참여인	2011-01-01	2011-12-30	2011-11-06		

상세내용

모집프로그램: 2011 지구촌 사랑나눔기 참여인 | 모집자: 아름다운재단 | 모집금액: 600,000,000 원 | 모집목적: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촌 어려운 모든 이웃을 위한 모금

모집금종의 총액 및 수량 현금

모집방법	모금액(원)	비고
인터넷	100,000,000	

모집금종의 금융기관 예치명세(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 별첨)

금융기관별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각 1부

순번	파일명
1	국민은행_잔액증명서.jpg

모집자의 주소: 서울시 중로구 복촌로 63-2(가회동) 아름다운집 | 성명: 박원순 | 보고일: 2011-11-06

추가 저장 삭제 **완료** 보고서등록 닫기

(1) 모집 완료(모집완료보고서) 및 사용결과(사용명세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또는 시·도)에 보고

※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 모집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단, 모집완료 및 사용결과에 대한 포털게시를 위해 작성 후 “보고” 버튼 클릭)

(2) 작성된 보고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행정안전부(또는 시·도)에 제출

7) 결산보고

FORUMS 단체 정보관리 단체 등록관리 모집등록관리 결산보고관리 연말정산관리

결산보고서

순번	귀속년도	단체명	단체 고유번호	작성일	보고일	확인일
1	2011	아름다운재단	제2011-001호	2011-10-30	2011-10-30	2011-10-30
2	2013	아름다운재단	제2011-001호	2011-11-01	2011-11-01	2011-11-01
3	2010	아름다운재단	제2011-001호	2011-11-06		

상세내용

> 1. 단체 인적사항

단체명	아름다운재단	대표자	박원순	고유번호	제2011-001호	전화번호	032-766-1004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63-2(가회동) 아름다운집			대표연락처	032-766-1004	귀속년도	2010

> 2. 수입명세 (단위: 백만원)

전체수입액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	기타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국가-지자체	기타				
131	100	20	3	5	0	0	0	0	1	2

> 3.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79 (%)

> 4.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 131,000,000 원 / 534 건

> 5. 기부금의 사용내역 (단위: 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용액(원)
청소년 돕기	방학하는 청소년 모임 지원	50,000,000

추가 | 삭제 | 추가 | 저장 | 삭제 | **보고** | 보고서등록 | 닫기

(1)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활용실적명세서(지정기부금단체)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 보고의 의무가 없는 단체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단, 포털게시를 위해 결산보고서 작성 후 “보고” 버튼 클릭)

(2) 작성된 보고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인 쇠 : 2012년 1월 일

발 행 : 2012년 1월 일

발행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연락처 : Tel. 02) 2100-3884, 2892

Fax. 02) 2100-3881

인쇄처 : 휘문인쇄(주) Tel. 02) 735-2523

